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 2004. 03. 01. 최초제정
- 2007. 04. 01. 부분개정
- 2008. 08. 29. 부분개정
- 2010. 10. 14. 부분개정
- 2012. 08. 01. 부분개정
- 2014. 10. 01. 부분개정
- 2019. 01. 01. 부분개정
- 2024. 05. 01. 부분개정
- 2025. 03. 01. 부분개정
- 2025. 12. 01.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원은 대전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개정 2019.01.01., 2025.03.01.>

제2조(목적) 본원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평 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원은 대학에 둔다.

제2장 조직

제4조(원장) ①본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전임교원을 겸보하거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4.10.01.>

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의2(조직) 본원에는 평생직업교육마이스터센터와 평생교육학사지원팀을 두고 사무 분장 규정에 의거하여 업무를 분장한다.<신설 2025.03.01.>

제5조(교직원) 본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및 평생직업교육과정개발위원회<개정 2025.12.01.>

제6조(구성) ①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평생교육과정 개발(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직업교육과정 개발위원회(이하 “개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2.01.>

②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개정 2025.12.01.>

제7조(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9.01.01., 2025.12.01.>

- 1. 교육사업계획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2.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사항
- 3.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4.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개발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신설 2025.12.01.>

- 1. 평생직업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 2. 평생직업교육과정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 3. 평생직업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자체평가에 대한 사항
- 4.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회의 및 의결) ①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5.12.01.>

②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25.12.01.>

제4장 설치과정

제9조(과정) 본원에는 평생교육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일반과정, 학점은행제, 생활교양과정, 자격과정, 외부사업(위탁)과정, 특화사업과정 등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01.01.>

제10조(학습기간 및 일수) 본원의 각 과정별 학습기간 및 일수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학점은행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019.01.01.>

제11조(지원자격)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01.01.>

제12조(선발방법)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과정운영 등) ①각 과정의 모집 시기 및 학습인원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01.01.>

②삭제 <2019.01.01.>

③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삭제

⑤본원의 설치과정의 교·강사 위촉 및 강사료 지급에 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학습비) ①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른다.

제14조의2(학습비 감면) ①평생교육원 일반과정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중복혜택은 받을 수 없다.

- 1. 본교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교직원직계가족 및 특별대상자의 경우는 수강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강좌별 감액비율은 최대 50%로 하며, 특별대상자는 원

장이 따로 정한다. [단, 학점은행제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10.14.>

②전항의 대상자는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대학 재학증명서 1부
2. 본 대학 졸업증명서 1부
3. 추천서 1부 <별지 2호>
4. 기타 증빙서류

제15조(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본원의 수료자는 각 교육과정에 설치된 개별 강좌의 70%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개정 2007.04.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 <별지 제1호 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의2(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학습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은 별지 제3호와 같이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보호 및 관리한다.<신설 2019.01.01.>

제5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

제16조(자치회) ①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

제17조(학습자 활동의 금지) 삭제<개정 2007.04.01>

제18조(상벌) ①원장은 학습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원장은 학습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6장 재정

제19조(회계년도) 본원의 회계년도는 대학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0조(예산편성) ①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개정 2019.01.01.>

②본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③원장은 회계종료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신설 2019.01.01.>

제21조(운영경비) 본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학습비
2. 본 대학 보조금
3.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4. 기타수입

제22조(회계업무)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 및 회계업무는 대학 예산 회계업무 규정에 따라 본원에서 관장한다.

제7장 보칙

제23조(시행세칙) 이 원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원칙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학칙과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 1항의 경우 규정개정일 기준 보직자에 대해서는 보직 임명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5.03.01.>

제 호

수료증

성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 ○
○ ○ ○ ○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본 증서
를 수여함.

년 월 일

대전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장 ○○○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

[별표 1]<개정 2024.05.01.>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